

의안번호	제 105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51
----------	------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령 등 변경(안 제2조,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규정 신설(안 제5조)
-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근거 신설(안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1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로, “기업 활동”을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를 “균형있는 지역경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4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조제1호”를 “제7조제1호”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 관련단체”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실·국·원 및 본부장(담당관,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충청북도</u>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u>기업 활동</u>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도모하여 <u>지역경제 발전</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3.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u>법 제24조</u>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충청북도</u>에 사업장을 두고 「<u>소득세법</u>」 제168조 또는 「<u>부가가치세법</u>」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p>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u>-----</p> <p>-----</p> <p>-----</p> <p>----- <u>경제활동</u>-----</p> <p>-----</p> <p>----- <u>균형있는 지역경제</u> -----</p> <p>-----.</p> <p>제2조(정의) -----</p> <p>-----.</p> <p>1. -----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p> <p>-----.</p> <p>제3조(적용범위) -----</p> <p>-----</p> <p>-----</p> <p>-----</p> <p>-----</p> <p>-----.</p> <p>-----</p>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생 략)

<신 설>

----- 제7조제1호-----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시행계획(이하 “소상공인 지원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

-----.

② -----

----- 소상공인 관련단체-----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 설>

<신 설>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
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
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
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

<신 설>

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신 설>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신 설>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실·국·원 및 본부장(담당관,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

--- 제7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

제7조 및 제1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련법령 발취

□ 소상공인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개정이유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4. 추계결과

- 산출과정
 -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 130,000원*9명*연1회 = 1,170천원
 -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산출과정 : 연간 1,170천원,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5,850천원 소요
- 재원 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참석위원 수당	5,850	1,170	1,170	1,170	1,170	1,17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사회적경제과장 김 선 희(220-2560)